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체크리스트) · 해설서

[대국민용]



스토킹 피해 상담
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개요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란?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 여부를 판단·인지하여, 주변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스토킹 범죄 관련 법률 제정과 피해자 보호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21.4.20.) 및 시행('21.10.21.)되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을 제정('23.1.17.) 및 시행('23.7.18.)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인 보호·지원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체크리스트 확인에 앞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 ▶ 아래의 순서에 따라, 본인의 경험이나 감정이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아래의 문항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발생한 행위로 인해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스토킹 행위 진단 항목

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
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
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	☐
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
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요)	☐
11	누군가가 나에게 ① 흥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 위협하거나 ③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체크)	☐
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 흥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 위협하거나 ③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체크)	☐
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해설서

■ 체크리스트 항목 분류와 개념 설명

스토킹 행위	체크리스트 1~9번 문항은 ‘스토킹 행위’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항목입니다. ▶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④ 특정 행위(체크리스트 1~9번)를 하여 상대방에게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 관련 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범죄	체크리스트 10번 문항은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진단하는 항목입니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하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고·처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제3호
스토킹 위험성	체크리스트 11~13번 문항은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입니다. ▶ 과거에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였거나, 교제 요구 혹은 접근을 위해 범죄를 시도한 적이 있다면 스토킹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전(현) 배우자 또는 연인 관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났다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24시간 전화상담)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을 통하여 상담·수사·법률·주거 지원 등을 받으세요.

※ 피해자 지원 내용은 본 안내서 4쪽 참고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잊지 마세요!>

체크리스트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위가 아니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 접근, 괴롭힘 등이 있거나, 이로 인한 불안·공포 혹은 위험을 느낀다면, 주저말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해설서

■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스토킹 피해 상담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66 ▶ 온라인 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 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 7일 이내, 최대 30일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 법률지원 •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 의료지원(의료비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 보호지원 •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 시범사업 • 긴급주거지원 :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 가능 (7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임대주택 주거지원 :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 동반가족 생활 가능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확대 예정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청과 협업 강화	▶ 스톱킹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 주거지원 시설 내 112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 신고 초기부터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 간 피해자 연계 ('23 하반기~)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해설서

■ 스토킹 행위 진단 항목별 설명

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 이유 없이 나에게 접근하거나, 접근해서 말을 걸거나, 건거나 자전거, 차량을 이용해 따라다니거나, 내가 가는 길을 막아 방해하는 것들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 이유 없이 집, 회사, 학교, 학원, 독서실 등 내가 주로 다니는 곳, 생활하는 모든 장소와 그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들이 모두 스토킹 행위입니다.

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

-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뿐만 아니라, 음식·꽃 배달서비스, 각종 서류 등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거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두는 것들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 나의 생활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부수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여기에는 화분, 자전거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벽, 현관문, 창문, 초인종, 도어락, 계량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법원은 여행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옆 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며 욕을 하고 계속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것을 스토킹으로 판단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우편, 전화, 팩스, 문자, SNS 등 송·수신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받고 싶지 않은 물건, 글, 말, 그림, 음성 메시지,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가 스토킹 행위입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최근 판례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나 프로필 사진, 부재중 전화, 통장 입금 내역(메시지) 등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는 등 스토킹 목적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하는 행위에 스토킹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해설서

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하거나,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또한, 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내 주소나 위치 등을 알려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일명 좌표 찍기와 같은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정보, 사진, 영상 등을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나의 정보 및 조작된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내 사진과 개인정보를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성매매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SNS, 커뮤니티, 블로그,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정보, 회사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메일정보, 아이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도용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누군가 나의 정보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등에 가입하거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나인 척 활동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나에게 해당 인물의 접근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포함한 증거 확보를 안내합니다.
- 피해를 당하는 주변 사람 역시 스토킹의 당사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해설서

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요]

- 앞선 1~9번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는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2회 이상) 나타났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 또한, 온라인에서 계속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하는 것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징후이므로 신속히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11. 누군가가 나에게 ① 흥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 ② 위협하거나 ③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중요]

- 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동이 확인되었다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 흥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 ② 위협하거나 ③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중요]

- 이러한 행동이 역시 곧바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중요]

- 폭행·협박, 가정폭력, 성추행, 성폭행, 납치·감금, 불법 촬영 및 유포,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등은 단독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 스토킹과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해설서

■ 참고: 체크리스트 용어 설명

- **불안·공포**는 스톱킹 행위로 인한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 두려움 등의 감정을 의미하며, 스톱킹 행위 자체로 유발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 **일상생활 장소**란 집, 주차장, 학교(학원), 직장, 체육시설, 마트, 도서관, 공원 등 평소 활동을 하며 이용하는 공간과 주로 이동하며 지나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체크리스트 ②③④항)
- **온라인 공간**은, 네이버(Naver) 카페·블로그, 밴드(Band),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텔레그램(Telegram Messenger), 카카오톡(KakaoTalk)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 매체를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체크리스트 ⑤⑥⑦⑧항)
-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에는 그림, 동영상, 링크 등이 첨부된 메시지도 포함되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물건 배달, 받지 않거나 차단한 부재중 전화, 통장 입금자에 메시지를 표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 발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체크리스트 ⑤항)
- **개인정보**란 다른 사람이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범죄 경력, 영상 속 모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SNS 등에 올린 나의 일상생활 장소 위치 정보나 현재 위치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같은 **신용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를 스톱킹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스톱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⑥⑦⑧항)
-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한 예로**,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 사진을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에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 유포(일명, 지인 능욕), 딥페이크 영상 제작, 온라인(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나의 주소 또는 개인정보 노출(일명, 좌표찍기) 등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⑦항)
- **사칭**이란 나,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의 이름, 별명, 사진, 영상 또는 주소나 학교, 회사와 같은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스톱킹 행위자가 나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⑧항)
-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란 나의 가족, 동거인뿐만 아니라, 친인척, 선후배, 직장 동료, 알고 지내는 사람 등 평소 나와 교류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등의 스톱킹 사례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⑨항)
- **2번 이상 반복하는 것**에는 반드시 같은 스톱킹 행위를 반복하거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며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스톱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체크리스트 ⑩항)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해설서

- 일상생활의 곤란이란 스토킹으로 인해 전학 또는 이직하고 싶거나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전화번호 변경,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모임 등을 피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체크리스트 ⑩항)
- 흉기는 커터칼, 과도, 식칼, 망치, 목공용 공구 등 위험한 물건을 포함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상황에 따라,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⑪⑫항)
- 위협하는 행위에는 손목을 굶는 등 자해하거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행위, 나의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정보로 협박하여 교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⑪⑫항)
- 범죄의 정의 (체크리스트 ⑬항)

협박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행위
폭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주거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는 행위